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[별지 제1호서식] <신설 2015.8.11.>

소비자단체 등록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일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대표자와의 관계	전화번호
	주소	

단체	명칭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전화번호
	대표자 성명	대표자 생년월일
	대표자 주소	대표자 전화번호
	설립연월일	
	회원의 수 (지부의 수 포함)	
	설립목적	
	주된 사업내용	

「소비자기본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공정거래위원회 또는
특별시장·광역시장· 귀하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첨부서류	1. 정관(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회칙을 말합니다) 1부 2.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.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·수지예산서,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.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23조제1항 각 호의 설비 및 인력 현황 각 1부 5. 지부 현황(지부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1부 6. 회원명부 1부 7.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
작 성 방 법

1. 첨부서류 제5호에는 지부별 주소·전화번호 및 직원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.
2. 첨부서류 제6호에는 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,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한 다음 '외 XX인'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.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 접수	→ 검토	→ 결재	→ 등록대장 작성	→ 등록등 교부
신청인	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	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	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	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	공정거래위원회 특별시장·광역시장· 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